# 질 문 답 변 서

(도시계획과)

| 질문의원 | 김 성 은 의원 |
|---|---|

【질 문】

○ 체부동에서 신교동간 7개동을 묶어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는?

【답 변】

○ 현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해 온 뉴타운 사업은 2006년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 현행법상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이 변경되고

○ 지구지정 요건인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이며, 면적은 주거지형이 50만㎡이상이나, 체부동에서 신교동간의 면적은 약40만㎡입니다.

○ 이 지역에는 옥인1구역(약30,000㎡),누하1구역(21,000㎡) 체부1구역(56,000㎡)등 3개구역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어 원활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 질 문 답 변 서

(문화진흥과)

| 질문의원 | 안 재 홍 의원 |
|---|---|

【질 문】

○ 관철동 피아노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

【답 변】

관철동 피아노거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

1. 기부채납을 안받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7조②항에 의하면 "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"라고 규정되어 있어,

○ 현재 관철동피아노거리조성과 관련하여 공사비 미불금과 불법 분양사기 피해,도로 점용료 체납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것이 해결 될 때까지 관리가 곤란한 상태이므로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

○ 향후 구청에서는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하여 미납된 도로 점용료를 조속 납부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, 공사비 미불금과 불법 분양 피해 민원을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,시공사에 독려하여 관철동 피아노거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

2. 다음은 무상사업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" 무상사용기간은 기부 채납된 재산의 가격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" 라고 되어 있고, 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를 보면 "사용료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경우 재산평정 가액의 1,000분의 25"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는 11억 3천만원이 투자되었으므로 이를 산정하면 40년이 되므로 무상사용 기간 산정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

* 무상사용기간 산정 11.3억원/2,825만원=40년
- 재산가격 : 11.3억원 (공사비)
- 사용요율 : 1,000분의 25이상

⇒ 연간사용료11.3억원*25/1000=2,825만원